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-143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2일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(주)나이스디앤비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4.4.25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◦ 개인신용정보,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2항제4호

◦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,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
및 컨설팅 업무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3항제4호

◦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,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
분석 및 컨설팅 업무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4항제3호